

CEO를 위한 소득 보상이란

CEO가 평생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한 근로의 대가로 급여(상여)와 퇴직금을 적절히 설계하여 정당한 소득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


임원퇴직금 손금산입(법인 비용처리) 요건

크게 현실적 퇴직사유일 것, 정관에서 정한 금액일 것, 실제로 지급한 것

- 1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할 것 (법인세법시행령 44조 1항)
- 2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또는 <u>일시금일 것</u> (법인세법시행령 44조 1항)
- 3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일 것 (법인세법시행령 44조 2항)
- 4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<u>정관에 정하여진</u> 금액일 것 (법인세법시행령 44조 4항)

현실적인 퇴직 사유



현실적인 퇴직사유 _ 소득세법 시행령 제 43조 (퇴직판정의 특례)

-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.
- 1. 직원이 <u>임원이 된 경우</u> ¹⁾
- 2. 합병·분할 등 조직변경, 사업양도 또는 직·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
- 3. 법인의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
-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(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, 이하 "퇴직소득중간지급"이라 한다)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.
- 1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제3조제1항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2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38조에 따라 <u>퇴직연금제도가 폐지</u>되는 경우
-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다른 법정퇴직금 지급(해당시점 급여적용), 임원으로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적용하여 계산함

임원 보수 규정 필요

» 임원보수 손금산입 (국심 1234.21-659,1967.8.16)

상법 제 3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 정관에 그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원의 보수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.

» 임원 상여금 손금산입 (소득세법 시행령 제 43의 2항)

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

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을 경우

- » 규정 있을 경우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(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4항 1, 5항)
 - ④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산입 한다.
 - 1. 정관에 퇴직급여(퇴직위로금 포함)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
 -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.

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



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을 경우

» 규정 없을 경우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(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4항 2)

2.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

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.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.

(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 됨)

세법상 비용처리 한도



손비처리 가능한 퇴직급여 = 1년간 총급여 x 1/10 x 근속연수

CEO를 위한 소득 보상 플랜 필요성

"임원퇴직금 재원 마련의 필요성"

비교적 큰 금액의 퇴직금 지급 규모, 반드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

퇴직소득 인정 요건

지급규정 정비

- ① 정관 변경 및 임원퇴직급여규정 제정
- 규정은 반드시 임원전체에 적용되어야 함
- ②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및 공증업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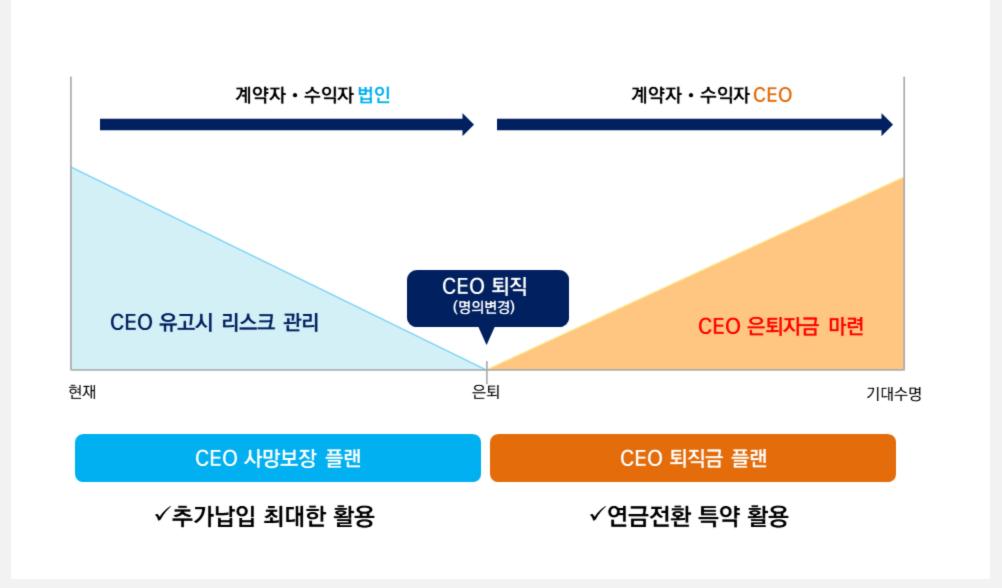


퇴직금 재원 마련

보험상품 활용시 장점

- ① 법인자금 효율적 운용
- 퇴직직전까지 법인자금, 중도인출 가능(유동성)
- ② 개인의 부족한 은퇴자금을 법인에서 준비
- 퇴직시 보험계약자 변경 후 연금으로 수령
- ③임원(대표이사)의 유고시 리스크 보장
- 보장성 보험 활용시 임원 유고시 리스크 헷지 가능

종신보험을 활용한 CEO 사망보장 플랜 & 퇴직금 플랜



임원 퇴직소득 한도 세법 규정 _ 한도 축소



임원 퇴직소득 한도 세법 규정 _ 한도 계산식

▶ 2020. 1. 1.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



- 1) 2012.1.1~2019.12.31까지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
- 2) 2020.1.1부터 퇴직일까지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

[참고] 퇴직소득 과세 방식 비교



근속기간 20년 임원에게 퇴직금 10억원 지급하는 경우

근속연수공제액확대

(단위: 천원)

항목	2012. 12. 31. 이전	2013. 1. 1. 이후	2016. 1. 1. 이후	2023.1.1. 이후
퇴직소득금액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
(-) 퇴직소득공제	기본공제 40% 40,000 근속연수공제 12,000	기본공제 40% 40,000 근속연수공제 12,000	근속연수공제 12,000	근속연수공제 40,000
과세표준	588,000	588,000	988,000	960,000
(÷) 근속연수	연분연승법 (÷)20년	5배 연분연승법 (÷)20년 (X) 5	12배 연분연승법 (÷)20년 (X) 12	12배 연분연승법 (÷)20년 (X) 12
차등공제			차등공제 254,180	차등공제 248,300
연평균 과세표준	29,400	147,000	338,620	327,700
(X) 세율	15%구간	35%구간	40%구간	40%구간
연평균 산출세액	3,330,000	36,550	109,275	105,140
(X) 근속연수	(X) 20년	(÷) 5 (X) 20년	(÷) 12 (X) 20년	(÷) 12 (X) 20년
산출세액(결정세액)	66,600	146,200	182,126	175,233,333
실효세율	6.66%	14.62%	18.21%	17.5%

[참고] 퇴직소득세 계산 관련 공제액 및 세율



차등공제 (환산급여공제)

환산급여	공제액	
8백만원 이하	환산급여의 100%	
8백만원 초과 7천만원이하	8백만원 + (8백만원 초과분의 60%)	
7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	4,520만원 +(7천만원 초과분의 55%)	
1억원 초과 3억원이하	6,170만원 + (1억원 초과분의 45%)	
3억원 초과	1억 5,170만원 + (3억원 초과분의 35%)	



트 퇴직소득 근속연수 공제 _ 2023년 변경

근속년수	공제액	
5년 이하	100만원 x 근속연수	
5년 초과 10년 이하	500만원 + 200만원 X (근속연수-5년)	
10년 초과 20년 이하	1,500만원 + 250만원 X (근속연수-10년)	
20년 초과	4,000만원 + 300만원 X (근속연수-20년)	



트 소득세율 _ 2023년 변경

환산급여	세율	누진공제
1,400만원 이하	6%	(=)
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	15%	126만원
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	24%	576만원
8,800만원 초과 ~ 1억 5천만원 이하	35%	1,544만원
1억 5천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	38%	1,994만원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	40%	2,594만원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이하	42%	3,594만원
10억원 초과	45%	6,594만원